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보 도 자 료		 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담당 부서 항만운영과	배포 일시	2015. 6. 25(목) 총 4매(본문 2, 붙임2)	
	담당 자	• 과장 이안호, 사무관 김세희, 주무관 이광호 • ☎ (044)200-5770, 5773, 5774	
보 도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5(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 부두운영회사 관리 강화 및 원활한 항만인력 수급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부두운영회사(Terminal Operating Company)의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만인력 수급관리 협의회'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을 담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는 항만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부두를 민간에 일괄 임대하여 이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가지고 부두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로 1997년부터 「항만법」과 해양수산부 지침 등으로 관리하여 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두운영회사의 선정과 계약 체결, 운영성과 평가 및 임대계약 해지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관리 운영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은 부두운영회사가 선정 당시 약속한 화물유치나 시설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에 명문으로 계획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계획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계획 미이행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문에 명시하여 관련 분쟁 발생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산업에 비해 재해발생률이 높은 항만운송사업 종사자 등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선박급유 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과 원활한 급유를 위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급유를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항만인력 수급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항만하역 작업 시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인사·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항만별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항만인력 수급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하여 항만운송과 관련한 인력을 수급·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만 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로 구성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부두운영회사'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등 항만운송 업무의 오랜 숙원과제를 개선·보완하게 되었으며,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우리 항만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최종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령 마련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홍보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김세희 사무관(044-200-57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부두운영화사 현황(’15.5월 현재) * 10개항, 40개 TOC, 44개 부두

연번	항만명	부두운영화사명	부두명	비고
1	부산항	인터지스(주)	7부두	
2		(주)동진	감천중앙부두	
3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	신항 다목적 부두	
4	광양항	(주)포스코	원료·CTS·제품·고철·로로부두	5개
5	울산항	울산항만운영(주)	1·2·3 부두	
6		(주)신홍사	3·4부두	
7		고려항만(주)	5부두	
8		(주)한국보광터미널	6부두	
9		울산항6·7부두운영(주)	6·7·8부두	
10	인천항	인천항2부두운영(주)	2부두	
11		인천항3부두운영(주)	3부두	
12		(주)한진	4부두	
13		대한통운(주)	4·5부두	
14		(주)선광	5부두	
15		동화실업(주)	6부두	
16		동부익스프레스	8부두	
17		인천항8부두운영(주)	8부두	
18		대주중공업(주)	8부두	
19		(주)INTC	목재부두	
20	마산항	마산항5부두운영(주)	5부두	
21	군산항	대한통운(주)	1·2·5부두	
22		세방(주)	3·5부두	
23		한솔CSN(주)	5부두	
24		(주)선광	6부두	
25		GCT(주)	6부두	
26		군산항7부두운영(주)	7부두	
27	목포항	씨제이대한통운(주)	대불부두	
28		목포대불부두운영(주)	대불부두	
29	평택·당진항	평택항만(주)	동부두	
30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동부두	
31		평택당진중앙부두(주)	서부두	
32		(주)평택당진항만	서부두	
33		당진항만(주)	고대부두	
34		당진고대부두운영(주)	고대부두	
35	포항항	포스코(주)	1,4,5부두	
36		동국제강	2부두	
37		포항항7부두운영(주)	7부두	
38		포항항8부두운영(주)	8부두	
39		포항영일만항운영(주)	영일만항 일반부두	
40	대산항	대산항만운영(주)	2 · 3 · 4부두	

참고 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추진 배경	내용
Ⅰ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부두운영회사 정의 신설	○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 시설 및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 부두운영계약 체결	○ 항만시설운영자는 항만의 효율성 및 항만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 체결
○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위약금 부과	○ 부두운영회사가 선정 당시 제출한 화물유치 또는 시설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 부과 가능
○ 부두운영회사 성과 평가	○ 매년 부두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임대료 감면 등 필요한 조치
○ 부두운영계약 해지	○ 항만재개발 등 공공의 목적 달성이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서면으로 통지
Ⅱ 검수사 등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제재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검수사·검량사·감정사 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
Ⅲ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제 도입	
○ 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위반 시 제재	○ 급유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경우 등을 감안, 선박급유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급유를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Ⅳ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화	
○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 안전 교육 의무화	○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 작업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
Ⅴ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구성	
○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운영	○ 항만운송과 관련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항만운송사업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항만별로 협의회 운영
Ⅵ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	
○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설치 운영	○ 항만운송과 관련한 분쟁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항만별로 협의회 운영